【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1. 2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1997년 12월 26일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실시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예규에 맞게 우리군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존에는 반일연가를 오전·오후를 기준으로 하여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반일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하여 허가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함. (안 제19조)

나. 기존에는 특별휴가제도 적용이 곤란한 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수학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존에는 토요일전일근무제 적용공무원의 경우 근무토요일의 모든휴가는 2일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전일근무제 적용공무원의 근무토요일의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반일연가는 반일로 처리 함. (안 제19조의 2)

라. 기존에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의 토요일 연가는 1일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함. 다만, 연가이외의 병가·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함. (안 제19조의 2)

마. 기존에는 토요일전일근무 실시하에서의 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시 근무일은 2일로 처리하고, 휴무일은 휴가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시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무·휴무에 관계없이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함. (안 제19조의 2)

바. 기존에는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에 대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참,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안 제20조)

사. 기존에는 퇴직후 당해연도 재임용공무원의 휴가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의 당해연도 사용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안 제20조)

아. 기존에는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그 때마다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자. 기존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부터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였으며, 분할휴가는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함. 다만, 장기훈련, 파견근무, 휴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토록 함. (안 제23조)

차. 기존에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민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만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도 포함토록 하고,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토록 함. (안 제23조(별표3) "경조사별휴가일수표"중 비고)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중 "연가는"을 "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와 연가) ①토요일전일근무제 적용 공무원의 근무토요일의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일연가는 반일로 처리한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한다. 다만, 연가이외의 병가·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한다.

③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출산휴가등)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무·휴무에 관계없이 휴가기간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3조 제1항중 별표3 "경조사별휴가일수표"의 비고중 "휴가를 실시함에"를 "가) 휴가를 실시함에"로 하고 나)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민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모·조부모·증모부모 뿐만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모부모도 포함하며,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한다.

⑥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훈련중일 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한 파견근무중일 때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한 휴직중일 때
4. 기타 본인 또는 기관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②(생략)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하여 ----------
④ ~⑤(생략)	④ ~⑤(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9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와 연가)
	①토요일전일근무제 적용 공무원의 근무토요일의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일연가는 반일로 처리한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한다. 다만, 연가이외의 병가·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한다.
	③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출산휴가등)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무·휴무에 관계없이 휴가기간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현행과 같음)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④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1조(병가) ① ~ ②(생략)	제21조(병가) ① ~ ②(현행과 같음)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⑥군수는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훈련중일 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한 파견근무중일 때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한 휴직중일 때 4. 기타 본인 또는 기관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⑦ ~ ⑨(생략)	⑦ ~ ⑨(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휴가일수표 별표(생략) 비고: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설〉	(별표3) ---------- 별표(현행과 같음) ----가)휴가를 실시함에 ---------- ---------- ----------. 나)민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뿐만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도 포함하며,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한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1971. 1. 15 조례 제224호]

개정 1972. 8.18 조례 제 321 호
〃 1977. 2.12 조례 제 505 호
전문개정 1977. 5. 2 조례 제 547 호
개정 1978. 3.18 조례 제 583 호
〃 1979.10.18 조례 제 644 호
〃 1981. 6.23 조례 제 747 호
〃 1982. 4.17 조례 제 811 호
〃 1983. 5. 6 조례 제 903 호
〃 1985.10.25 조례 제1074호
〃 1988. 1.26 조례 제1174호
〃 1988.10.10 조례 제1223호
〃 1989. 4.18 조례 제1261호
〃 1989. 7.12 조례 제1285호
〃 1993. 4. 9 조례 제1448호
〃 1994. 6. 8 조례 제1491호
〃 1996. 2.12 조례 제1559호
〃 1997. 2.24 조례 제160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 3 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 7 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및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및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및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 9 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주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 6. 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2장 근 무 시 간 등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4. 6. 8)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휴가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신설 '94. 6. 8)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간 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을 때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3. 청백리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군수는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3. 4. 9)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94. 6. 8)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5 장 정치운동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행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15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8.18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2 조례 제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 5.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양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505호 1977. 2. 12)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1978. 3.18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0.18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23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17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6 조례 제 90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25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6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8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12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6. 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24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편 내무 제2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별표1)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합니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2)

공 직 자 의 행 동 률

〈대 민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대 내 관 계〉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3)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

(개정 '94. 7. 5)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 인	7
	○ 자 녀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 배우자(처)	1
사 망	○ 배우자	7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 자 녀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 상	○ 배우자	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4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2. 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o 폐기물관리법의 개정('95. 8. 4 법률 제4970호)과 동법시행규칙('96. 2. 5. 환경부령 제18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o 조례에 인용된 용어와 중복된 내용의 조항을 정리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등 인용법령을 일부 수정함(안 제1조)

나.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제3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2장 제목, 제6조, 제7조 제목, 동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목, 동조 제1항, 제10조 제목, 동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1조 제목, 동조 제4항 제6항 제12조 제목,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목, 동조 제1항, 제25조)

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함(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목,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1조, 제13조)

마.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정('94. 12. 29)시 부칙에 의거 삭제된 조항을 정리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함. (안 제11조)

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 (안 제12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를 말한다.
4.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보관·수집하여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건으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토석,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등) ①군수는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 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주군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지정) 군수는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할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 - 100가구당 1개조(4-5종)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m³이상)을 설치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용쓰레기용기 설치승인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처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②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가. 청소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포함 한다) 및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량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마.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 해태 사실이 없는한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법. 령.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군수는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업무위탁등) 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행위위탁) 인접한 시, 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제반사항을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table>
<tr><td colspan="5">(제9조4항관련)
공중용쓰레기용기 설치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5 일</td></tr>
<tr><td colspan="2">승인 제 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 명</td><td colspan="2"></td><td>②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5">(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④설치희망장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⑤설 치 용 도</td><td colspan="2"></td><td>⑥설 치 개 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양 주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7">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를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td></tr>
<tr><td colspan="7">(첨부서류)
1. 사 양 도 1부
2. 설계도서(설치장소) 1부
3. 용기의 실무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td></tr>
</table>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1991·3·8 法律第4363號全文改正〕

改正 1992·12·8 法律第4539號
1993·3·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4·1·5 法律第4714號(環境改善特別會計法)
1995·8·4 法律第4970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2·12·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8·4〉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 死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에 의한 中間處理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6. "再生處理"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로서 廢棄物을 再利用·再生利用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削除 〈95·8·4〉

第3條 (適用範圍) ①이 法은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과 醫療法에 의한 摘出物등과 汚水·糞尿및畜產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에 의한 廢棄物의 처리에 있어서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汚染防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여 廢棄物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廢棄物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과 事業者의 淸掃意識함양과 廢棄物發生抑制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③國家는 指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指定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④國家는 廢棄物處理에 대한 技術을 硏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5條 (廢棄物의 廣域管理)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道 또는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廢棄物處理施設(指定廢棄物公共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總理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8·4〉

第5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①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

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5·8·4〕

第6條 (國民의 責務)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淸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第7條에 規定된 地域 또는 施設을 管理하고 있는 者는 당해 地域 또는 施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 (廢棄物의 投棄禁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文化遺跡地·公園·廣場·野營場·海水浴場·道路·港灣·漁港·下水道·河川·湖沼·山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또는 施設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第8條 (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市·道知事는 環境處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③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廢棄物處理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 國家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9條 및 第10條 削除 〈95·8·4〉

第11條 (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處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

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8·4〕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14條 削除 〈95·8·4〉

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生活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및 ③削除 〈95·8·4〉

④事業場廢棄物중 指定廢棄物을 運搬·처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그 運搬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⑤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新設 95·8·4〉

⑥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방법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8·4〉

第3章 廢棄物處理業등

第26條 (廢棄物處理業) ①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廢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廢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廢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終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營業

4. 廢棄物再生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再生處理하는 營業

5. 廢棄物綜合處理業

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再生處理, 中間處理,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營業

③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는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處理對象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營業區域의 제한은 廢棄物收集·運搬業의 경우에 한한다.

〔全文改正 95·8·4〕

第27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全文改正 95·8·4〕

第28條 (許可의 取消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第40條 (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敎育) ①廢棄物處理業·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管理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한 者는 그 該當者에 대하여 당해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41條 (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등(第7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改正 92·12·8, 95·8·4>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
3. 내지 5. 削除 <95·8·4>
6.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7. 第4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第42條 (休業·廢業등의 申告)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43條 (보고·檢查등) ①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查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章 補 則

第44條 (廢棄物의 輸入制限) 環境處長官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全文改正 95·8·4〕

第53條 (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5·8·4〉

第54條 (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①市·道知事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實績을 다음해 2月말까지 環境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廢棄物業務에 관련된 指導·團束등의 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55條 (許可등의 手數料) 第26條第1項 및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56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57條 (聽聞)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8條, 第29條第1項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나 營業의 정지 또는 課徵金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 또는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8·4〉

第58條 (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등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總理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 管理·운영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章 罰 則

第6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5·8·4>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보관한 者
2. 내지 4. 削除 <95·8·4>
5.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6의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7.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理한 者
8. 第24條第2項·第25條第4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및 10. 削除 <95·8·4>
11. 削除 <92·12·8>
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13.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4. 및 15. 削除 <95·8·4>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5·8·4>

1.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30條第3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3. 第4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使用制限命令을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③周邊影響地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環境상 영향기준에 의하여 直接影響圈과 間接影響圈으로 구분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直接影響圈으로 결정된 地域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에 대하여 그 土地등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買收에 관하여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적용한다.

⑤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收한 土地를 第20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便益施設·綠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第18條 (移住對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敷地 및 그 直接影響圈안의 住民에 대하여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에 관하여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적용한다.

第19條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에 대한 第10條의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결정·告示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周邊影響地域에 대한 産業誘致·基幹施設擴充등 地域開發促進을 위한 사항을 당해 地域의 地域開發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第20條 (住民便益施設의 設置)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 또는 그 인근에 체육시설·목욕시설등 地域住民을 위한 便益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第21條 (住民支援基金의 조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住民支援基金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住民支援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의 出捐金
2.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에 대하여 徵收한 手數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인한 收益金

③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성한 住民支援基金의 운영·관리에 관한 業務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住民支援基金의 運用·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住民支援基金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의 지원)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基金은 周邊影響地域住民의 所得向上 및 福利增進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直接影響圈과 間接影響圈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 또는 家口별로 행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附帶施設등의 施設設置基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造景·進入道路邊 防塵·防音施設·진입터널등의 附帶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施設의 종류 및 設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下部給의 제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으로부터 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을 部給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工程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者에게 下部給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의 書面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 (地域住民의 常駐監視員 雇傭)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廢棄物의 搬入·積荷·處理過程을 監視하기 위한 職員을 採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周邊影響地域의 住民중에서 우선적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第26條 (環境상 영향의 調査·公開)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周邊影響地域에 미치는 環境상 영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調査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경우 또는 재생처리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재료 또는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사료화·퇴비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다목 내지 바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개선·대체등에 필요한 조치내용 및 대상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선조치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폐유, 폐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폐내화물,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이하 "도자기편류"라 한다),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또는 폐농약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나. 폐산·폐알칼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다. 오니의 배출량이 월 5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에 한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도

2. 지정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또는 설치계획서(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월 50킬로그램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지정폐기물에 한한다)

제11조 (지정폐기물의 보고)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문개정 '94. 8. 25
조례 제 1509 호]

(개정 1994. 12. 29 조례 제1518호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찌꺼기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4.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토석,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청결유지등) ①군수는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

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주군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 6 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등) 군수는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

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4~5종)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을 설치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

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군수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나. 대행기간

다. 대행수수료

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마.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바.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사.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비치계획

자.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차.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주군의 관할구역내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 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 3 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제14조 (삭제 '94. 12. 29)

제15조 (삭제 '94. 12. 29)

제16조 (삭제 '94. 12. 29)

제17조 (삭제 '94. 12. 29)

제18조 (삭제 '94. 12. 29)

제19조 (삭제 '94. 12. 29)

제20조 (삭제 '94. 12. 29)

제 4 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21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군수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군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업무위탁등) 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8.25 조례 제1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양주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12.29 조례 제1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④기재생략